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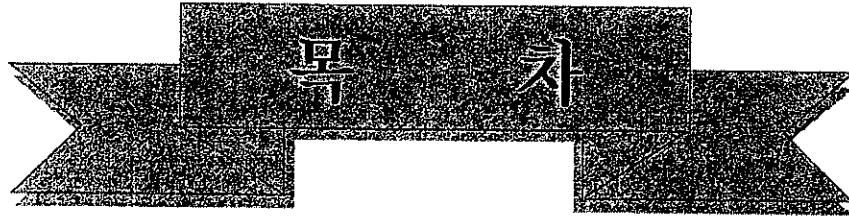
기자간담회 자료

# 한미FTA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대응방안

2007. 4. 2.

농 립 부

"농식품 세계일류, 농촌Global Top 10"

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. 농업 분과 협상 타결 주요내용 .....  | 1 |
| 1. 농산물 주요 타결내용 .....       | 1 |
| 2. 주요핵심품목 양허내용 .....       | 3 |
| II. 국내대책 .....             | 4 |
| 1. 기본방향 .....              | 4 |
| 2. 수입증가에 따른 직접 피해 보전 ..... | 5 |
| 3. 품목별 경쟁력 대책 .....        | 6 |
| 4. 농업의 근본적 체질강화 .....      | 8 |

## **I | 농업 분과 협상 타결 주요 내용**

---

### **1. 농산물 주요 타결내용**

**□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**

- 별도의 수입쿼타 제공 등 어떠한 형태의 추가적인 쌀 시장의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

**□ 쇠고기, 오렌지, 낙농품, 꿀, 식용대두, 식용감자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예외적 취급방안 도입**

-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, 관세의 장기간 철폐, 계절 관세,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

- [현행관세 유지] 감귤 성출하기의 오렌지(50%), 탈지·전지 분유(176%), 연유(89%), 식용감자(304%), 식용대두(487%) 및 천연꿀(243%)의 관세는 기존의 현행관세를 그대로 유지

- 다만, 기존의 대미 수입 추세와 관세를 철폐했을 경우 수입선을 미국으로 전환시키는 기대효과를 감안해,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무관세 쿼터를 소량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시장접근 기회 보장

※ 상당수의 주요 품목에 대해 현행관세 유지를 확보한 것은 미국이 체결한 여타 FTA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 가능

- **[세번분리]** 감자와 대두의 경우 관세율표상 세번(품목분류번호)을 식용과 가공용으로 분리하여, 국내 생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식용감자와 식용대두에 대해서는 **현행관세를 유지**
- **[과일에 대한 다양한 보호장치 도입]** 미국의 경쟁력이 강한 과일류에 대해서는 **계절관세를 도입**하거나, **세번을 분리**하여 국내에서 주로 생산·소비되는 품종은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화
  - 오렌지, 포도는 수확기와 비수확기로 구분하여, 우리 수확기 동안에는 **현행관세를 유지**(오렌지)하거나, 관세를 **17년**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철폐(포도)
  - 사과, 배는 국내에서 주로 생산·유통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세번을 별도로 신설하여 **20년** 동안 철폐하기로 하고, 나머지 품종은 10년간 철폐(사과는 23년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유지)
- **[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]** 쇠고기, 돼지고기, 사과 등 민감품목, 고추, 마늘, 양파, 인삼, 보리 등 **고관세 적용 품목**에 대해 관세철폐로 인해 일정물량 이상 수입이 급증할 경우 **자동으로 관세를 다시 올려 국내시장의 교란을 방지**하는 완충 장치인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
- **[관세철폐기간 장기화]** 관세가 매우 높거나 민감한 품목은 **15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기간 확보**
  - 쇠고기, 고추, 마늘, 양파, 인삼, 사과, 포도, 배, 감귤 등

## 2. 주요 핵심 품목 양허내용

| 유형                | 품목             | 양허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양허제외              | 쌀              | ○ 쌀 및 관련 세번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현행관세 유지, 수입쿼터     | 식용대두·감자분유, 천연꿀 | ○ 현행관세 유지<br>○ 무관세쿼터 제공 (물량, 연간 증가율)<br>- 대두(25천톤, 3%), 감자(3천톤, 3%)<br>- 분유(5천톤, 3%), 천연꿀(2백톤, 3%) |
| 계절관세, 현행관세 유지     | 오렌지            | ○ 수확기(9월~2월): 현행관세 유지(50%)<br>- 무관세쿼터 2,500톤 제공(매년 3% 증량)<br>○ 비수확기: 30%부터 시작, 7년간 철폐              |
| 계절관세              | 포도             | ○ 수확기(5월~10월15일): 17년 철폐<br>○ 비수확기: 24%부터 시작, 5년간 철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세번 분리 장기 철폐 세이프가드 | 사과             | ○ 후지 : 20년 관세철폐, 23년 세이프가드<br>○ 기타 : 10년 관세철폐, 10년 세이프가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세번 분리 장기 철폐       | 배              | ○ 아시안 품종 : 20년 관세철폐<br>○ 기타 : 10년 관세철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장기 철폐 세이프가드       | 쇠고기            | ○ 15년 관세철폐 및 세이프가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돼지고기           | ○ 10년 관세철폐 및 세이프가드<br>(냉동육은 2014. 1. 1자로 철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고추, 마늘, 양파     | ○ 15년 관세철폐, 18년 세이프가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인삼             | ○ 18년 관세철폐, 20년 세이프가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1. 기본방향

- ◆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보전체계는 협정발효 전에 작동 완비
- ◆ 한미FTA 이행기간 동안 피해 예상품목의 경쟁력 향상
- ◆ 중장기 대책으로 농업구조조정 방향을 명확히 제시

- 수입량 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직불금 지원
  -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필요한 경우 폐업자금 지원
- 피해 품목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경쟁력 제고 지원 강화
  -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 강화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품질 차별화
  - 우수브랜드 중심의 유통체계 개편 및 종자·종축산업 육성
- 농가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여 근본적인 농업 체질 강화 도모
  -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를 농업정책 대상으로 하여, 경쟁력 제고 및 경영위험관리 강화
  - 농가경영주의 절반을 차지하는 고령농에게 다양한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으로 원활한 은퇴유도
  - 취미·부업농은 농업정책지원대상에서 제외

## 2. 수입증가에 따른 직접 피해 보전

### ① 수입피해 보전을 위한 소득보전직불금 시행

- FTA농어업특별법(제5조)의 소득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을 현재의  
키위, 시설포도에서 한미FTA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으로 확대

\* 현행 품목별 소득보전직불금 대상품목 : 키위, 시설포도

- 품목별 소득보전직불금의 지원기준과 요건은 품목별 특성  
등을 감안하여 재검토
- 품목별 소득보전직불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은  
FTA 이행지원기금계획에 반영하여 지원

### ② 폐업희망 농가에 대해 폐업지원금 지급

- 지원대상은 고정투자가 이루어진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  
하여 산업(품목)간 구조조정 도모

\* 현행 폐업지원 대상품목 : 키위, 시설포도, 복숭아

- 「FTA농업지원 위원회」 심의를 거쳐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 
품목 조정 및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등 마련

\* 현재는 실제 수입피해여부와 상관없이 지원, 재식재 금지기간 5년,  
생산 및 폐기 시설물 철거시 순수익의 3년분을 보상(양도는 1년)

### 3. 품목별 경쟁력 제고 지원

#### 축 산

□ 쇠고기는 우수브랜드 육성 및 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와  
쇠고기 이력 추적사업을 통해 수입산과 차별화

- '08년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한육우 전두수 대상 실시
- 인공수정 확대 및 고급육 생산기술 확대로 품질 고급화

\* 쇠고기 1등급이상 출현율 : ('95) 12.8% → ('06) 44.5

□ 돼지는 축사 현대화 및 질병발생 억제로 생산성 향상

- 환·배기 및 분뇨처리 시설 현대화로 감염 및 폐사를 억제

\* 돼지고기 A등급 출현율 : ('95) 6.3% → ('06) 36.3

- 자연순환농업 정착으로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

□ 닭·오리는 유통체계개선으로 신선도 및 위생수준 향상

- 닭·오리고기 포장시 작업장 명칭을 표시, 수입육과 구분
- '08년부터 사육단계 HACCP 도입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

□ 낙농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로 생산성 향상

- 총체보리 기반시설 및 조사료 유통시설지원 등 강화

\* 총체보리 재배면적 : ('05) 6,281ha → ('06) 9,000ha

- 로봇착유기 등 자동화 시설설치로 관리비 절감 도모

## 원예분야

- 과실류는 당도 표시기준 마련과 생산·재배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품질 경쟁력 제고
  - 감귤은 당도가 높은(12브릭스 이상) 감귤 생산을 위해 다공질필름 및 비가림 시설 면적을 확대('06년 : 8%)
  - 사과는 키낮은 사과원, 배·복숭아는 밀식과원, 포도는 비가림시설의 재배면적을 확대
- 채소류(고추·마늘·양파)는 우수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우량 품종 보급과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
  - 고추는 기계화에 적합한 신품종을 개발, 생산비 절감
  - 마늘은 종구 갱신을 향상('06년 : 40%)
  - 양파는 수입대체용 중·만생종 교배품종을 조기에 육성
- 인삼은 신품종 개발, 기계화율 제고, 계약재배 확대 추진
  - 생산·유통시설이 현대화된 수출전문단지 육성

## 곡물·임산물

- 식용콩·감자 등은 생산우수단지를 중심으로 생산·가공·유통을 담당할 브랜드 경영체 육성
- 호두, 밤 등 임산물은 기계화 등 생산기반 정비 추진 및 친환경·안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보급

## 4. 농업의 근본적 체질 강화

### ◇ 농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맞춤형 농정 본격 추진

- 전업농·중소농 : 규모화 촉진 + 소득안정직불
- 고령농 :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은퇴 유도
- 취미·부업농 : 농업지원대상에서 제외

### **전업농** : 규모화 및 실질적 소득안정 도모

#### □ 경영규모 확대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적극 지원

- 토지집약형 농업(쌀, 과수 등)은 농지 임대차를 통한 규모 확대
- 시설형 농업(시설채소, 축산 등)은 시설·장비 구입 자금 지원  
- 전업농 중심으로 시설 현대화 자금 일부 보조지원

#### □ 적정소득 보전을 위해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 도입 추진

- 농업소득이 과거에 비해 하락할 경우, 그 일부를 보전
- '농가등록제'를 도입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준·전업농, 후계농, 창업농 대상으로 지원

### **고령농** : 다양한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방안 마련

#### □ 생계형 농업을 하는 고령농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방안 검토

-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요건 등은 관계부처 협의와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

※ FTA농어업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지원 규정을 정비하고  
FTA이행지원기금을 확충

## 참고

## 농업·농촌 종합대책 및 투융자 계획 조정 방안

### 〈 기본 방 향 〉

- ◇ 한·미FTA 등 개방확대에 대응, 농업경쟁력 및 소득보전 강화
- ◇ 소비자와 농촌주민을 고객으로 하는 농식품·농촌정책 확대

□ **농업정책**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의 경영규모확대와 경영위험관리 강화를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농정으로 전환

- 규모화 경영을 주도할 전문경영체 육성 및 소득안정장치 강화

□ **농식품정책**은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·지원

- 기능성·편리성·향토성 등을 갖춘 농식품 개발과 상품화 추진

□ **농촌정책**은 발전가능성이 있는 마을에 기초생활시설지원을 집중하고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와 소득원 확충

- 교육·복지서비스는 읍·면 소재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

### 〈농업·농촌종합대책 조정방향〉

#### 〈기존대책(2004.2)〉

-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산업정책</b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시장지향적 구조개편</li> <li>▪ 친환경·고품질 농업</li> <li>▪ 신성장동력 확충</li> </ul> |
| <b>소득정책</b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직불제 확충</li> <li>▪ 농외소득 증대</li> <li>▪ 경영안정 강화</li> </ul>         |
| <b>농촌정책</b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사회안전망 확충</li> <li>▪ 복지인프라 확충</li> <li>▪ 농촌지역개발</li> </ul>       |



#### 〈조정안〉

-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농업정책</b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전문인력·경영체 육성</li> <li>▪ 농가소득·경영 안정</li> <li>▪ 유통구조 혁신</li> <li>▪ 성장동력 확충</li> </ul> |
| <b>농식품정책</b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고품질·친환경 농식품 공급</li> <li>▪ 농식품 안전성 관리</li> <li>▪ 농식품 산업 육성</li> </ul>               |
| <b>농촌정책</b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교육·복지 여건 개선</li> <li>▪ 농촌지역개발 촉진</li> <li>▪ 농촌자원 산업화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|

➡ 한미FTA 대책을 반영하여 금년 상반기내 조정안 확정